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남고성군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9. 0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변상(3명), 경고(9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☐ 농신보 보증사고 통지의무 위반으로 대손판정 일부불인정
 - 배당 요구 종기일을 경과하여 통지함에 따라 대손판정 일부 불인정됨.
- ☐ 외부감정평가 전산무작위 의뢰 소홀 등
 - 감정 평가를 의뢰 시 전산을 부정적하게 하는 등 대출 취급을 소홀히 함.

< 관련법규 >

-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 제9조(통지의무)
-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」 제1편 제1장 제1절 제12조(보증책임의 면책), 제1편 제4장 제2절 제3조(신용보증약관), 제1편 제4장 제3절 제5조(면책기준),
- 「업무위탁계약서」 제3조(수탁기관의 의무)
- 「신용보증약관(직접보증용)」 제5조(통지의무), 제14조(면책사항)
-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, 제32조(가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 심사), 제34조(가격조사서의 심사), 제35조(외부감정평가서의 심사), 제43조(토지의 가격 산정 방법), <별표1-1> 외부 감정평가 의뢰 기준표
- 「조합감사-00284(2025.04.28.)」 외부감정평가 전산 무작위 의뢰 위규행위 감사 및 처분 계획 안내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2조(기타 조치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 업무처리규정」 제19조(변상책임의 발생요건)부터 제23조(변상판정 의결)까지